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 「약사법」(법률 제14926호) 개정시행(개정 17.10.24, 시행 18.10.25.)

- 「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개정 주요 내용

● : 필수 표기 의무, □ : 주요 개정 사항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는 사항	약사법 개정 시행(18.10.25.)	
	기록	나목
의약외품 명칭	●	●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	●
용량 또는 중량	●	●
제조번호	●	●
사용기한	●	●
품목기준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	●
보조제 <small>부제외신고증 등록번호로 정하는 경우 제외</small>	●	●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 저장방법, 그 밖에 적도록 한 사항	●	●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	●
그 밖에 종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
표기표지	●	●
용법용량	●	●
사용설의 주의사항	●	●
증설유래 성분의 경우 성분명, 기원등을 및 사용부위	●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5조제2항에 정한 경우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조자는 “제조의뢰자”로, 수탁자는 “제조자”로 기재	●	●
제조·제조자와 수탁·수탁자 간의 계약의 성질과 주소 (제작제조 수탁 또는 수탁하는 “수탁자” 또는 “소분제조자”로 표기하는 “제조자”)	●	●
금연보조제 경고문구, 타르 일산화탄소 등 특성성분에 관한 사항	●	●
타르제스 사용 시 링크	●	●
각 품목별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애서 청탁	●	●
제65조 사항	●	●

* -약사법 제2조제7호디귿 및 일부 나舛(살충제류)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따라 2019.1.1자로 환경부 이관 예정

○ 「약사법」 65조의 2(외부 포장 기재 사항) 신설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제6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소비자가 제품 구매하는 과정에 의약외품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으로 제조(수입)업체는 제조(수입)한 의약외품의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소비자가 약사법 제65조의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약사법」 65조의 3(첨부 문서 기재 사항) 신설

의약외품에 첨부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외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외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3.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은 그 기준에서 의약외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 의약외품 중 첨부문서가 있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안내, 안전사용을 위해 첨부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조항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39호) 개정

시행기정 18.5.31, 시행 18.10.25.]

약사법·개정(법률 제)으로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전성분, 사용기한 표시 등이 2018년 10월 25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기재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 제4조(제명법) 개정 주요내용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는 사항	고시 개정 (음식법 제1조제1호기록)	임시법 제2 소제17호 나부 제17 임시법 제17 부 제17 법
의약외품 명칭	제가(신고)된 '제품명'으로 기재	
제품명이 기재된 동일면에 제품명의 일부 삽호나 상표도 표시기재로 인정가능	사용기한이 제 조연월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용 기한" 또는 "까지"의 문자와 "연월일"을 조합. · 사용기한 : ○○년○○월○○일, ○○년○○월○○일~○○년 월 일 까지, "사용기한 : ○○년○○월○○일~○○년○○월○○일" 또는 "○○년○○월○○일~○○년○○월○○일 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 사용기한 표시 항목에 날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에는 사용기한 표시 위치 기재가능 (예, 사용기한 : 용기 상단 표시일까지)	임시법 제17 부 제17 법
품목허가증 및 품목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의 원료명을 순차적으로 기재 (예, 천성분 : 부직포, 폴리에틸렌필름, 접착제) 추가적으로 원료마다 조성분 명칭, 배합목적 등을 상세 기재할 수 있다.	임시법 제17 부 제17 법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6조(권장사항) 신설

- ※ 11.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는 경고 문구의 기재(‘의약외품 법위 지침,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함)

의약외품 안전사용을 위해 고위험군 소비자 등을 고려한 제품 표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의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경고 문구 표시 등 원장사항 추가

12. **법 제2조제7호기록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표시사항은 용기나 포장 등의 한면 (또는 한 면의 일부)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기재**

※ 글자 크기 등 : 표체 14포인트, 헤드라인 8포인트, 내용 7포인트

「약사법」 제12조제7호가목에 해 당하는 의약외품의 표시사항

수령인
이름
성명
성명(또는 증명 또는 개명)
000-0000000000000000
000, 00시00구00로00길C
000 8 (또는 00개)

卷之三

الآن في كل مكان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업체의 편의를 위해 표준화된 서식 적용 권장합니다.
* 유통법, 제조업자(수출) 등 또는 8호에 끄기 해금 시 각 항목(정부별)을 고내기

13. 법 제10조제7호기록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일부 성분나 상표를 표시한 동일면에 기재한 제품명의 글자크기는 14포인트 이상으로 기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브랜드명(상표명) 등을 제품 전면 표기해드리고 소비자가 청탁(허가)된 제품(제품명)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게 표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卷之三

의약외품 표시기준 관련 주요 FAQ

번호	질의	검토결과
1	[질의] 지면류 전성분 표기 등 「약사법」(법률 제14926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개정에 따른 시행일자는?	「약사법」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5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18. 10. 25.부터 제조·수입하는 의약외품의 용기·포장 등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기재하여야 함.
2	「약사법」(법률 제14926호) 개정사항 적용 시점은 제조일자, 출하(출고)일자 중 어느 시점인지? 수입의 경우는?	「약사법」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5조에 따라 「제조일자」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 참고로 수입의 약품의 개정규정 적용은 수입일(통관일) 기준임
3	시행일자(18. 10. 25.) 이전에 선제적으로 표시사항을 바꾸어 적용하여도 괜찮은지?	「약사법」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른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함
4	사용기한, 전성분 표기 등 변경된 표시기재사항을 스티커 등으로 수정이 가능한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은 위변조의 우려가 크며, 위변조 여부에 대해서 소비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임 또한, 표시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은 표시기재의 훼손으로 볼 수 있어 스티커 등의 재작업은 허용하기 어려움
5	지면류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시 방법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칙」(식약처 고시 제2018-37호)에 따라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신고)증」의 원료 약품 및 분량의 원료약품명을 순차적(한글영문의 오름차순 정렬)으로 기재 예 : 전성분: 「부지포」, 풀리에틸렌필름 접착제 - 추가제으로 원료마다 조성성분 명칭, 배합목적 등을 상세기재 할 수 있음
6	허가(신고)된 원료약품 및 분량의 원료명이 「접착테이프」, 「부지포」의 경우, 「접착테이프」, 「부지포」를 표기하는지, 접착테이프만 사용되는 원료를 상세 기입해 이포인에 사용되는 원료를 표기하는 원료명을 모두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성분은 품목허가(신고)증의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 항에 기재된 원료명을 모두
7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37호)에 기재된 원료명이 등일련 분리되어 두 번 기재된 경우(예: 표지 - 부지포와 흡수체-부지포), 용기라벨에도 명칭을 두 번 기재해야 하는지	해가(신고)증에 기재된 원료명이 등일련 경우 중복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37호)제4조의2에서 원료명 외에도 추가로 조성성분 명칭이나 배합목적을 으므로, 원료명과 함께 배합목적을 명기할 경우 중복기재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8	원약 분량상에 배합목적이 「착향제」인 원료는 원료명을 생략하고 「향료」로만 표기가 가능한지?	- 「약사법」 제65조제1항5호 및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의2에 따라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원료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다만, 「착향제」를 「향료」로 기재하도록 한 사항은 「상표명은 성분 정보가 아니므로 조합향료이거나 상표명에 한하여 「향료」로 기재하도록 한 것임
9	지면류 의약외품의 명칭표기 시 포장 뒷면에 제품명 : 000으로 표시하고, 정면에 상표(브랜드명) 표기가 가능한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37호)에 따라 제품명이 기재된 정면에는 상표(브랜드명) 표기가 가능한지? (제품 포장에 허가명(제품명)을 표기 한다면 다른 브랜드명을 추가 표시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10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향목에 「별도	- 해당 제품에 기재된 문구로 인해 소비자가 다른 제품이나 다른 제품명으로 오인될 수 있어, 허가받지 않은 브랜드 표기는 적절하지 않음

질의	검토결과
표기'로 표시가 가능한지	<p>제34조(제4항)에 제34조제4항에 따라 제3조번호나 사용기한 항목에 번호나 날짜를 바로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표기된 위치를 선택기재 해야 함 (예: 사용기한 : 응기 상단 표시일까지)</p>
사용기한 표기 시 제조연월일을 날짜(숫자)로 표기하고 사용기한: 제조연월일로부터 00개월 기재가 가능한지	<p>사용기한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39호) 제4조 제4항에 따라 날짜(숫자)와 까지의 문자를 조합하여 표기(예 : 사용기한 : 00년00월00일 까지 등)하여야 하며, 항목에 날짜를 바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기한 표시 위치를 기재하되, 언급한 위치에는 정확한 사용기한(날짜)을 표시하여야 함</p>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 표기 시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 : 제품 상단 표시일 까지로 표기하고 사용기한 표기는 날짜(숫자)로만 작성이 가능한지?	<p>사용기한과 제조번호는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표시 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39호) 제4조제4항에 사용기한 표시 항목에 표시 위치와 별도 표시된 숫자의 의미(기자는 문구 등)를 함께 기재한 경우 날짜만으로 표시 가능함</p>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39호)의 [별지 제1호 서식] 1.약자법 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표시서 험·권장 서식 (제6조제12호 관련)의 글자크기는 의무사항 인지	<p>약자법 제65조 등에 따른 의약외품 기재사항의 표시글자크기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39호) 제4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함 - 동 고지 [별지 제1호 서식]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업체의 편의를 위해 서식 및 글자크기 등을 정하여 험·권장하는 사항임</p>
내용 7포인트	